

Vol.1571



# 법원공보

2019. 7. 1. MON

법원행정처

## ● 목 차

예규	911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917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개정예규
	920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926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928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931	능력검정시험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932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940	
공고	945	

## 예규

### ◎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83호 2019. 6. 12. 결재)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담당)** 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하며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제3조(안내 방법)** ① 안내는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제4조(대상사건 및 대상자)**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일 경우는 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1. 변제·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2.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3. 그 밖에 공탁사건의 공탁자·피공탁자 등

**제5조(조사)** 매년 제4조의 대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탁금의 지급제한사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선별한다.

**제6조(안내문 발송 및 처리)** ①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대하여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조회하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② 변제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1, 집행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2,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3, 그 밖에 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4의 각 양식에 따른 해당 안내문을 발송하되,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에 첨부된 별지 ‘공탁금(유가증권) 출급 청구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③ 발송한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는 폐기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일 경우에는 안내문을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매년 1. 31.까지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결과(총 조사대상 사건 수, 안내문 발송

건수, 안내문 발송 후 출급·회수한 사건 수 및 지급액 등)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유의사항) 안내문은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의 첨부 서류가 될 수 없다.

####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2]

##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아래 공탁사건에 대해 해당법원 관할공탁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

공탁사건번호 및 공탁종류 :       년 금 제       집행공탁

공탁일자 :       년 월 일

공탁자 :

피공탁자 :

금액(잔액) :       원

※ 공탁신청시 귀하에 대한 공탁금액은 원이므로 지급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를 피공탁자로 한 위 집행공탁사건[관련사건( )]이 현재 미완결 상태로 있습니다.  
(가)압류, 국세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출급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한 사건의 채권확정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한사건( )

2. 공탁금 출급청구시 구비서류

① 배당절차와 관련된 집행공탁의 경우는 관련사건의 부서(경매, 기타집행계)를 경유하고 증명서를 받아 이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덧붙임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에 기재된 서류

※ 개별 사건마다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안내문은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참조).

※ 신분확인관계상 전화로는 공탁사건 내용을 알아보실 수 없으므로 의문이 있으시면 해당법원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 [별지 3]

## 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아래 공탁사건에 대해 해당법원 관할공탁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

공탁사건번호 및 공탁종류 :       년   금   제       호 재판상 보증공탁

공탁일자 :       년   월   일

공탁자 :

피공탁자 :

금액(잔액) :       원

- ※ 공탁신청시 귀하에 대한 공탁금액은 원이므로 지급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를 공탁자로 한 위 재판상 보증공탁사건[관련사건( )]이 현재 미완결 상태로 있습니다.  
(가)압류나 국세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회수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한 사건의 채권확정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한사건( )
2. 공탁금 회수청구시 구비서류
  - ① 담보취소결정정보 및 확정증명(담보제공명령 발령법원에 신청)
    - ※ 담보취소의 요건(민사소송법 제125조 참조)
      - 담보사유의 소멸(제1항) : 담보제공자(공탁자)가 승소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동의(제2항)
      - 소송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제3항)
  - ② 덧붙임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에 기재된 서류(다만, 그 내용 중 공탁통지서는 공탁서로 대체함)
3. 공탁금은 그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안내문은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참조).

- ※ 신분확인관계상 전화로는 공탁사건 내용을 알아보실 수 없으므로 의문이 있으시면 해당법원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 [별지 4]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아래 공탁사건에 대해 해당법원 관할공탁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

공탁사건번호 및 공탁종류 :       년   금   제       호       공탁

공탁일자 :       년   월       일

공탁자 :

피공탁자 :

금액(잔액) :       원

- ※ 공탁신청시 귀하에 대한 공탁금액은 원이므로 지급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를 [(피)공탁자 등]로 한 위 공탁사건[관련사건( )]이 현재 미완결상태로 있습니다.  
(가)압류나 국세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출급·회수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한 사건의 채권확정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한사건( )
2.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 구비서류  
“덧붙임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안내문”에 기재된 서류  
※ 개별 사건마다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은 그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안내문은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참조).

- ※ 신분확인관계상 전화로는 공탁사건 내용을 알아보실 수 없으므로 의문이 있으시면 해당법원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셔서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84호 2019. 6. 18. 결재)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무란(수신자기호 및 기관명)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무	기관명	무	기관명	무	기관명
902062	여천등기소				
902141	진안등기소				
902142	무주등기소				
902143	장수등기소				
902144	임실등기소				
902145	순창등기소				
902146	고창등기소				
902147	부안등기소				
902148	김제등기소				
902149	익산등기소				
902151	전주등기소				
902241	서귀포등기소				
902841	남양주등기소				
902842	구리등기소				
902843	연천등기소				
902844	포천등기소				
902845	가평등기소				
902846	동두천등기소				
902847	철원등기소				
902848	의정부등기소				
902849	파주등기소				
902850	고양등기소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무	기관명
(이 상 생 략)	
<u>902641</u>	<u>동대문등기소</u>
<u>902642</u>	<u>북부등기소</u>
<u>902643</u>	<u>도봉등기소</u>
(이 하 생 략)	

**개 정 안**

[별표 1]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무	기관명
(이 상 생 략)	
<u>&lt;삭 제&gt;</u>	
<u>&lt;삭 제&gt;</u>	
<u>&lt;삭 제&gt;</u>	
(이 하 생 략)	

### ◎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85호 2019. 6. 20.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 별표 1에 따른 7급 승진임용자과정 교육을 수료한 법원·등기서기(이하 ‘능력검정시험합격자’라 한다)”를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법원·등기서기(이하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근속승진된 사람임을 입력(예 : "○○서기 근속승진", "○○주사보 근속승진" 등)하고 능력검정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근속승진(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과 같이 입력한다.

제11조제1항 중 “합격하지 아니하고”를 “합격하지 않거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하고”로, 같은 조 제5항 중 “합격한 경우”를 “합격하거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경우”로 한다.

제11조의2 중 “능력검정시험합격자”를 “능력검정시험합격자 또는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법원·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 등)** ① 법원·등기사무직렬 7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규칙 제36조제3항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현재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 중에서 통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승진임용 또는 임용추천한다.

- ②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은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반기별 1개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개 교육과정을 사전에 수료할 수 있고, 장기간 휴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횟수의 제한없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 ④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은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실시하되, 교육과정 운영 등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횟수 제한에 관한 특례)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능력검정시험 응시대상자는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횟수의 제한없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제3조(능력검정시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능력검정시험에 합격 또는 불합격하고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등기주사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전산 시스템에 근속승진 된 사람임을 입력(예 : “○○서기 근속승진”, “○○주사보 근속승진” 등)하고 능력검정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과 같이 입력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신설〉

⑧ (생략)

제11조(규칙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법원·등기주사보 및 법원·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 ① 규칙 제47조의2제7항에 따라 일반승진 시험 또는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근속승진 임용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등기주사보 및 법원·등기주사가 담당할 직위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한한다.

개정안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⑧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근속승진된 사람임을 입력(예 : “○○서기 근속승진”, “○○주사보 근속승진” 등)하고 능력검정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근속승진(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과 같이 입력한다.

⑨ (현행 제⑧항과 같음)

제11조(규칙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법원·등기주사보 및 법원·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 ① -----  
----- 합격하지 않거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하고 -----  
-----  
-----

현행

- 1. ~ 6. (생략)
- ② ~ ④ (생략)
- ⑤ 법원·등기주사보 근속승진임용자가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과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1조의2(법원·등기주사보 및 법원·등기주사보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능력검정시험 합격자가 법원·등기주사보 및 법원·등기주사로 근속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과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해당직급의 법원·등기 사무직렬 일반승진 임용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개정안

- 1. ~ 6.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  
----- 합격하거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경우 ----- .

제11조의2(법원·등기주사보 및 법원·등기주사보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능력검정시험 합격자 또는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 -----  
-----  
-----  
-----  
----- .

제15조의2(법원·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 등) ① 법원·등기사무직렬 7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규칙 제36조제3항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현재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 중에서 통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승진임용 또는 임용추천한다.

- ②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은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반기별 1개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 현 행

## 개 정 안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개 교육과정을 사전에 수료할 수 있고, 장기간 휴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횟수의 제한없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 ④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은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실시하되, 교육과정 운영 등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정한다.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86호 2019. 6. 20. 결재)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표 2의 기관별 구분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실란 6급 상당 이하 비서의 근무성적평정 1차 평가자 “기획제1심의관”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별표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의 근무성적 평가자(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평가대상자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이상 생략				
법 원 행정처	행정처장실	4급 상당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6급 상당 이하	소속비서관	행정관리실장
	행정처차장실	6급 상당 이하	총무담당관	행정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실	6급 상당 이하	기획제1심의관	기획조정실장
이하 생략				

### 개 정 안

[별표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의 근무성적 평가자(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평가대상자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이상 생략				
법 원 행정처	행정처장실	4급 상당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6급 상당 이하	소속비서관	행정관리실장
	행정처차장실	6급 상당 이하	총무담당관	행정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실	6급 상당 이하	기획조정심의관	기획조정실장
이하 생략				

◎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87호 2019. 6. 20. 결재)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V. 훈련성적평정의 법원공무원 훈련성적평정 체계 표 중 “8급 및 9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원공무원 훈련성적평정 체계 〉

직렬별	직급별	평정점 산정 방식	비고
법원·등기 사무직렬	8급	이수한 교육과정 수×15.0	
	9급	”	

IV. 2. 가. 2) 나) 중 “7, 8급”을 “7급”으로 “9급”을 “8, 9급”으로 한다.

IV. 2. 가. 2) 다) 중 “8급 및 9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렬별	직급별	평정점 산정 방식	비고
법원·등기 사무직렬	8급	이수한 교육과정 수×15.0	
	9급	”	

VI. 3. 가. 6)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등기사무직렬 8급의 훈련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예규는 IV. 2. 가. 2) 나)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개정 부칙(제2597호, 2015. 3. 30.시행)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31일 이전에 기본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법원·등기사무직렬 8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IV. 훈련성적평정

〈 법원공무원 훈련성적평정 체계 〉

직렬별	직급별	평정점 산정 방식	비고
법원·등기 사무직렬	(생략)		
	(생략)		
	7급	이수한 교육과정 수×7.5	
	8급	—	
	9급	이수한 교육과정 수×15.0	

\* 법원(등기)사무직렬 이외의 일반직에 대한 훈련성적평정점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직 사서직렬에 대한 훈련성적평정이 있음

\* 피교육자로 지명된 일이 없어 위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및 교육과정수별로 합산한 평정점이 9점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점을 9점으로 본다.

1. (생략)
2. 훈련성적평정점 산정
  - 가. 법원사무직렬 및 등기사무직렬 5급 이하
    - 1) (생략)
    - 2) 훈련성적평정점의 산정
      - 가) (생략)
      - 나) 법원·등기 사무직렬의 5, 6급의 경우는 3개 교육과정을, 7, 8급의 경우는 2개 교육과정을, 9급의 경우는 1개 교육과정을 각 이수한 경우에 15점의 평정점을 부여한다.
      - 다)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수별 평정점 산정은 아래 방식에 의한다.

### 개정안

#### IV. 훈련성적평정

〈 법원공무원 훈련성적평정 체계 〉

직렬별	직급별	평정점 산정 방식	비고
법원·등기 사무직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급	이수한 교육과정 수×7.5	
	8급	이수한 교육과정 수×15.0	
	9급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훈련성적평정점 산정
  - 가. 법원사무직렬 및 등기사무직렬 5급 이하
    - 1) (현행과 같음)
    - 2) 훈련성적평정점의 산정
      - 가) (현행과 같음)
      - 나) -----  
----- 7급 -----  
----- 8, 9급 -----  
-----  
-----
      - 다) -----  
-----

현행

직렬별	직급별	평정점 산정 방식	비고
법원·등기 사무직렬		(생략)	
		(생략)	
		(생략)	
	8급	—	
	9급	<u>이수한 교육과정 수×15.0</u>	

라) (생략)

나. ~ 라. (생략)

Ⅵ. 승진후보자명부

1. · 2. (생략)

3.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가. (생략)

1) ~ 5) (생략)

6)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나. · 다. (생략)

4. (생략)

개정안

직렬별	직급별	평정점 산정 방식	비고
법원·등기 사무직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급	<u>이수한 교육과정 수×15.0</u>	
	9급	—	

라) (현행과 같음)

나. ~ 라. (현행과 같음)

Ⅵ. 승진후보자명부

1. · 2. (현행과 같음)

3.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가.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나. ·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 능력검정시험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대법원 행정예규 제1188호 2019. 6. 20. 결재)

능력검정시험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89호 2019. 6. 20. 결재)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 또는 규칙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의 공적에서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예규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음주운전 횡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횡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2월 2일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징계사유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의 도가 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 각종 규정 미준수 - 지연처리 - 확인소홀 - 관리·감독 책임소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책, 불이익처분
나. 공금(물), 보관금(예납금) 또는 공탁금 횡령·유용	파면, 해임	해임, 강등	강등, 정직	정직, 감봉
다. 공문서 위·변조, 파기, 망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라. 허위문서·조사표 작성, 허위보고, 허위전산입력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마. 비밀대외비 문서관리 소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바. 문서, 기록, 관인관리 소홀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사. 시험부정행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아. 근무평정 관련 부정행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자. 감사업무방해 행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차. 예산·회계 관련 비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카. 물품 및 시설관리 태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타. 감정인 선정관련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해 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파.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 고발 의무 불이행	해 임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3.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 월 3일(회) : 최초 무단결근 등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의 일(회)수를 산정				
가. 무단결근	해임 ~ 견책 (월 3일 초과)			불이익처분 (월 3일 이하)
나. 지참, 무단이석	강등 ~ 견책 (월 3회 초과)			불이익처분 (월 3회 이하)
다. 당직근무 불이행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징계사유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비위의 도가 높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높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높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높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높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높고 경과실인 경우	
4. 친절·공정업무 위반										
가.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나. 불공정에 의한 물의 야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5. 비밀엄수업무 위반										
가.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나. 행동강령신고 내용 누설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다.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 해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가. 금품·향응 수수 또는 요구	별표 2									
나. 금품·향응 수수 관련 관리감독 소홀	강등~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 해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 해임		강등 ~ 감봉		감봉, 견책			
라. 성매매	파면, 해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집단행위포함) 금지의무 위반										
가. 정치운동(집단행위포함) 금지의무 위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10. 행동강령의 위반										
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나.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위반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다. 특혜의 배제 위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마. 인사청탁 및 인사개입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징계사유 \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바.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해 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사. 알선청탁 금지위반	해 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아.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해 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자.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의 금지 위반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차. 외부강의 등의 신고위반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카. 금전의 차용 및 대여금지 위반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타.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위반	감 봉	견 책	불이익처분	
파.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	해 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 비고

- 제1호가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제7호가목, 나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음주·무면허운전 징계양정기준

구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유형		처리 기준
음주운전	최초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정직 ~ 견책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강등 ~ 정직
		음주측정 거부	강등 ~ 정직
	2회 (음주측정 거부 포함)		해임 ~ 강등
	3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포함)		파면, 해임
	인적·물적 피해 발생	상해 또는 물적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 정직
	운전업무 종사자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최초)	해임, 강등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최초)	파면, 해임
		음주측정 거부	파면, 해임
		2회 이상의 경우	파면, 해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중의 운전		강등,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중의 음주운전		파면 ~ 강등
	단순 무면허운전		견책, 불이익처분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거부"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종사자"란 운전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직무수행 중의 운전 또는 관용차 운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 부분 양정기준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징계의 감경)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 또는 규칙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의 공적에서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li> <li>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li> <li>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li> <li>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li> <li>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li> <li>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li> </ol>

현행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 또는 규칙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의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

징계사유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높고 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높고 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높고 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높고 과실이 있는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생략)					
파.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 처분	
※ 비교 - (생략) - (생략) - (생략)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생략)					

[별표 1]

징계사유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높고 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높고 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높고 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높고 과실이 있는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현행과 같음)					
파.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 처분	
※ 비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현행과 같음)					

현행

[별표 1의2]

구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유형	처리 기준	
음주운전	최초	혈중알콜농도 0.1% 미만	감봉, 견책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정직, 감봉
		음주측정 거부	정직, 감봉
		2회 (음주측정 거부 포함)	해임 ~ 정직
		3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포함)	파면, 해임
	인적·물적 피해 발생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의 경우	정직, 감봉
		중상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임, 강등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 정직
	운전업무 종사자	혈중알콜농도 0.1% 미만 (최초)	강등, 정직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초)		파면, 해임	
음주측정 거부		파면, 해임	
2회 이상의 경우		파면, 해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중의 운전	정직, 감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중의 음주운전	해임 ~ 정직	
	단순 무면허운전	견책, 불이익처분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거부”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부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종사자”란 운전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직무수행 중의 운전 또는 관용차 운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 부분 양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안

[별표 1의2]

구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유형	처리 기준	
음주운전	최초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정직 ~ 견책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강등 ~ 정직
		음주측정 거부	강등 ~ 정직
		2회 (음주측정 거부 포함)	해임 ~ 강등
		3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포함)	파면, 해임
	인적·물적 피해 발생	상해 또는 물적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 정직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최초)	해임, 강등
	운전업무 종사자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최초)	파면, 해임
음주측정 거부		파면, 해임	
2회 이상의 경우		파면,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중의 운전		강등, 정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중의 음주운전	파면 ~ 강등	
	단순 무면허운전	견책, 불이익처분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거부”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종사자”란 운전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직무수행 중의 운전 또는 관용차 운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 부분 양정기준을 적용한다.		

## ● 신법령 목록 (2019. 6. 1. ~ 6. 15.)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b>【조약】</b>				
조약제2418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문화와 인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2019. 6. 5	19517	4
<b>【대통령령】</b>				
대통령령제29799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6. 4	19516	5
대통령령제29800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980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9802호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9803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9804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2980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29806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29807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29808호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2980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2981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2981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4
대통령령제29812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0
대통령령제2981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6. 11	19520	5
대통령령제2981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9815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9816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981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6. 11	19520	10
대통령령제2981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29819호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2982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29821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0
대통령령제29822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29823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29824호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2982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29826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29827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29828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2982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5
대통령령제298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7
대통령령제2983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1
대통령령제29832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2
대통령령제2983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4
대통령령제29834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0
대통령령제29835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3
대통령령제29836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6
대통령령제29837호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	56
대통령령제29838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9
대통령령제29839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1
대통령령제2984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29841호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	"	65
대통령령제29842호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7
대통령령제2984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2

대통령령제29844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6. 11	19520	91
대통령령제29845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2
대통령령제2984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4
대통령령제29847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95
대통령령제29848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5
대통령령제29849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	"	106
대통령령제29850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0
대통령령제2985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1
대통령령제2985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3
대통령령제29853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8
대통령령제29854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9
대통령령제29855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1
대통령령제29856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2
대통령령제2985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3

### 【총리령】

총리령제1540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7	19518	4
총리령제1541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12	19521	4
총리령제1542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 【부령】

교육부령제18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3	19515	3
행정안전부령제121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
농림축산식품부령제366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	"	"	6
고용노동부령제25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문화체육관광부령제354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4	19516	44
보건복지부령제62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4

농림축산식품부령제367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7	19518	4
해양수산부령제343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해양수산부령제342호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산업통상자원부령제337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10	19519	3
산업통상자원부령제338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해양수산부령제344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법무부령제95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11	19520	125
문화체육관광부령제35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5
보건복지부령제629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4
고용노동부령제25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5
외교부령제67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12	19521	14
문화체육관광부령제356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17
문화체육관광부령제35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
보건복지부령제630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3
보건복지부령제63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0
보건복지부령제63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6
보건복지부령제63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47
보건복지부령제63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8
보건복지부령제635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3
보건복지부령제636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4
보건복지부령제6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7
보건복지부령제63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96
보건복지부령제63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6
보건복지부령제640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1
보건복지부령제641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4
보건복지부령제642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	"	183
보건복지부령제64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4

환경부령제809호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2019. 6. 12	19521	185
환경부령제81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9
국토교통부령제625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 행규칙	"	"	214
환경부령제810호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13	1952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2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	"	14
산업통상자원부령제339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14	19523	4

## ● 공 고

### 관인등록 공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2019. 7. 1. 시행),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2019. 7. 1. 시행)에 의하여 2019. 7. 1.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이 개칭됨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용하는 관인을 등록하였음을 법원사무관리규칙 제 40조, 동 시행내규 제5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등록 관인 공고 목록 1부.

2019. 6. 2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장

## [붙임] 등록 관인 공고 목록

관인명	인영	최초사용일	등록관인의 등록연월일	등록사유
서울북부 지방법원 등기관인		2019. 7. 1.	2019. 6. 19.	‘법원사무기 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대법 원규칙 제2845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의 일부 개정 (대법원규칙 제2849호)
서울북부 지방법원 등기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2019. 7. 1.	2019. 6. 19.	
서울북부 지방법원 등기국장인		2019. 7. 1.	2019. 6. 21.	



